

#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41호
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71호, 2023.12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28일  
보건복지부장관

##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82.2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82.5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4.1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99.1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102.4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74.6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102.1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96.0원

### 부 칙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“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”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.</p>	<p>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형별 분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수당 단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1.2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3.6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6.0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8.8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58.7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9.3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3.5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</u>	<u>81.2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3.6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96.0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98.8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58.7원</u>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<u>99.3원</u>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3.5원</u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형별 분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수당 단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병원 및 종합병원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2.2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요양병원</u>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2.5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4.1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9.1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2.4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74.6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2.1원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6.0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병원 및 종합병원</u>	<u>82.2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요양병원</u>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<u>82.5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4.1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99.1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102.4원</u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74.6원</u>	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102.1원</u>	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6.0원</u>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</u>	<u>81.2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3.6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96.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98.8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58.7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	<u>99.3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3.5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병원 및 종합병원</u>	<u>82.2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<u>요양병원</u>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<u>82.5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4.1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99.1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102.4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74.6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102.1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6.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